파라과이한국교육원 한국어 강좌 운영 규정

파라과이한국교육원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파라과이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강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제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으로 강좌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원”이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을 말한다.
2. “강사”란 교육원에 계약되어 한국어 강좌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3. “수강생”이란 교육원에서 개설된 한국어 강좌에 절차에 맞게 등록하여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강좌의 출석)

1. 수강생은 지각 및 결석 시 사전에 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친족(부, 모, 형제, 조부, 조모)의 경조사, 본인의 병결, 학교의 시험 등으로 인한 사유일 시에는 지각 및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 서류는 강사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되, 종강 후 일괄적으로 교육원에 제출한다.)
3. 중복 수강은 한국어 강좌와 특별 강좌(한국어능력시험 관련 강좌, 한국어 말하기 강좌 등)를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4조 (수업의 진행 및 변경)

1. 한국어 강좌의 최소인원은 5명으로 하며, 강의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인원 미달 시 강좌는 자동적으로 폐강된다.

2. 강사는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강생이 강사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수업 진행에 방해되는 행동을 반복하면, 강사는 해당 수강생을 수업에서 내보낼 수 있으며, 이에 2회 이상 불응할 시 해당 학생의 수강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수업 변경은 이동할 수업에 공석이 남았을 시, 수업 시작일로부터 2주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로도 수업 변경은 불가능하다. 단, 수업의 수준 상승 혹은 하락이 필요할 시에만 해당 수업 강사와 협의하여 수업 변경이 가능하다.

5. 수강 취소는 수업 시작일로부터 7주까지 가능하며, 이후 기간 중 수강생 임의로 취소는 불가능하다.

6. 학생이 한국어 강좌 수강 등록을 취소할 경우, 담당 강사는 이를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수업 교재는 수업 시작일로부터 4주까지 수령 가능하며, 이후에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제5조 (수업의 보강)

1. 강사의 사정으로 해당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시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보강 강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2. 보강 강사가 수업 준비와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강사는 미리 수업 진도와 내용, 출석부 등을 보강 강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수강생이 결석 시, 결석한 강의의 수업자료를 강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강사는 수강생이 필요로 하는 자료만 공유할 수 있다.

4. 비대면 수업 시 수업이 녹화된 영상 파일의 직접적인 공유는 불가하다. (단, PPT 자료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강사 재량으로 공유가 가능하다.) <*개정 2025.1.9.*>

제6조 (시험)

1. 학생은 70% 이상의 출석률을 확보한 경우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2. 평가 후 이수 기준 점수은 70점으로 하며, 숙제와 수행평가는 시험 점수 및 시험 응시 대상자 선별에 관련되지 않는다.

3. 시험 응시일에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강사와 협의하여 다른 요일에 시험 응시가 가능하나, 사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친족(부, 모, 형제, 조부, 조모)의 경조사, 본인의 병결, 학교 시험, 직장 업무, 출장 관련 사유서는 인정되나, 그 외 가족 여행, 개인적인 사유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7조 (수강료 납부 및 환불)

1. 수강료는 학기당 250,000PYG로 한다. <*개정 2025.1.9.*> <*개정 2026.1.28.*>

2. 수강료 납부는 납부 공지일로부터 강의 시작일의 전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강의 시작일에 수강료가 납부되지 않을 시 수강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

3. 한국어 강의 최소인원 미달 시 혹은 교육원의 사정으로 수업을 폐강하는 경우 수강료는 전액 환불 처리되며, 이외에 수강생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8조 (수강 제재) 수강생의 강좌 출석률이 50% 이하일 시 해당 학기

의 다음 학기에 수강 등록이 불가하며, 강좌 출석률 30% 이하일 시 해당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동안 수강 등록이 불가하다.

제9조 (수업 평가)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강좌별로 수업 평가가 실시될 수 있고, 강사가 받은 수업 평가 점수는 강사별 강좌 배정, 강사에 대한 처분사항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제10조 (장학금)

1.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성적, 출석률, 수업 태도, 수업 참여도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반 강사가 장학생을 5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
2. 장학생 수는 장학생 추천일 기준 시점 반 인원의 25%를 넘을 수 없다.
3. 장학생은 해당 학기 시험 성적 90점 이상, 출석률 9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교육원은 추천된 장학생 중 선정하여 차학기 수업료를 감면한다. 단, 해당 감면은 차학기에 한하여 1회 적용되며, 어떠한 사유로도 이월되지 않고 차학기가 종료되는 순간 소멸한다. <*개정 2026.1.28.*>

(부칙)

1. 본 한국어 강좌 운영 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2.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6. 1. 28.

파라과이한국교육원장